

2025년 1분기 건설기술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

《지역건축안전센터》

□ 관련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(예산의 전용)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
□ 전용 사유

- '25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·시비보조금은 총 500백만원 (국: 307백만원, 시: 193백만원)
- 해당 보조금은 자본적 경비 및 자본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'25년 상임위 예산안 검토 시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 통계목 변경(자치단체경상보조금 → 자치단체자본보조)

□ 전용 내역

- 세부사업 :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
- 전용방법 : 세부사업 통계목 변경
 - (감)자치단체경상보조금(308-01) → (증)자치단체자본보조(403-01)
- 전용금액 : 500,000천원
- 전용내역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현액	변경요구액		변경 후 예산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	민간 건축물 안전관리	기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	자치단체등 이전 (308)	자치단체 경상보조금 (308-01)	500,000	-	500,000	-
			자치단체등 자본이전 (403)	자치단체 자본보조 (403-01)	-	500,000	-	500,000